문서번호	민원여권과-107524
결재일자	2015.12.16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
주무관	반	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		행정관리국장
유미옥	2	김희순	서문석	12/16 <b>정찬모</b>
협조				

# 원문공개 결재문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 (2015.11월분)



행 정 관 리 국 (민원여권과)

# 원문공개 결재문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

2015.10.1부터 결재문서의 원문공개 대상이 국장이상 확대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문서 공개여부 모니터링 결과 보고임

### I 추 진 근 거

- □ 결재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재문서 원문공개 확대
  - 구청장방침 제1017호(2015.9.17)호

# Ⅱ 추진개요

- □ 국장이상 결재문서 모니터링
  - 기 간 : 2015.11월분 국장이상 결재문서
  - 점검내용 :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포함 문서 여부 확인

### Ⅲ │ 세 부 내 용

□ 결재문서 현황

2015년 11월	총계	구 분			공개율
2013년 11월	<b>공</b> 세	공 개	부분공개	비공개	る川豊
부구청장이상	300	169	13	118	60.7%
국장급이상	2,561	1,675	243	643	74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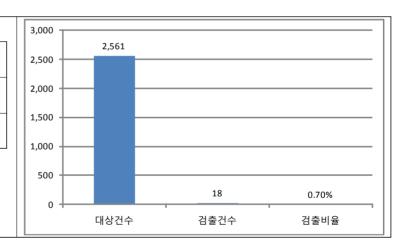
### □ 국별 결재문서 현황 및 공개율(2015.11월)

부서명	결재건수	공개	부분공개	비공개	공개율
합계	2,561	1,675	243	643	74.9%
감사,정책홍보	64	42	1	21	67.2%
행정관리국	422	278	12	132	68.7%
기 획 경 제 국	309	218	21	70	77.3%
복지환경국	317	242	17	58	81.7%
도시관리국	211	178	2	31	85.3%
안전건설교통국	245	174	4	67	72.7%
광진구의회	318	171	129	18	94.3%
보 건 소	667	367	57	243	63.6%
동 주 민 센 터	8	5	0	3	62.5%

#### □ 검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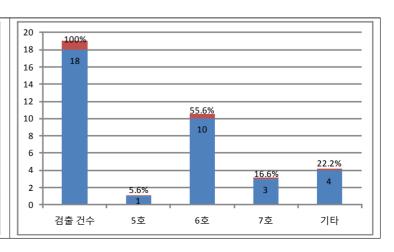
총 대상건수	2,561
검출건수	18
검출비율	0.7%

※ 검출현황 : 따로붙임



### □ 검출 유형별 현황

구 분	건수	비율
검출 건수	18	100%
5호(위원회 의사 결정 등)	1	5.6%
6호(개인정보)	10	55.6%
7호(영업비밀)	3	16.6%
기타(문서제목에 이름 등 기재)	4	22.2%



#### 【모니터링 내용】

- □ 비공개대상정보 포함여부 관련
  - 대상건수 2,561건중 1,129건이 출장(622건) 및 초과근무(507건) 관련 문서로 대부분을 차지
  -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검출건수는 18건으로
    - ▶ 주요 검출내용으로는
    -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서 공개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위원회 회의록중 발언 위원의 이름을 비공개하여야 하나 공개된 사례가 1건이 있었고,
    -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본문 및 첨부물에 교육 등 참석대상자의 서명정보 공개 및 개인의 핸드폰번호,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로 설정한 사례가 검출건수 18건중 10건을 차지하였음
    -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 3건으로 첨부물에 업체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
    - ▶ 기타내용으로
    - 모든 결재문서의 문서제목은 공개되므로 문서제목에 이름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름을 기재함

#### □ 결재문서 공개율

- 국장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74.9%로 전월(74%)보다 약간 상승하였고, 부구청장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60.7%로 전월 (60%)보다 약간 상승함
  - ▶ 매년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.0 평가분야에 기관의 문서공개율이 (부구청장이상 문서) 포함되므로
  - 본문에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없고 첨부물에 있는 경우 부분 공개로 설정하고
  -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생산시에는 '제한종료일' 설정기능을 적극 활용
- 물품매입(수리·운반)품의 및 요구서 등 물품구매서류 작 성시 비공개 설정 건수가 많음
  - ▶ 본문에 비공개사항이 없을 경우 공개 또는 부분공개 설정요망
  - 법인등의 상호, 단체명, 영업소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⇒ 공개(법제처)
  -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⇒ 비공개(대전지법)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
  - ※ 개별적・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의 경영・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수 있음 (법령 해석례 11-0395)

#### □ 행정사항

- 문서상신시 임의적인 비공개분류가 되지 않도록 확인 및 점검
  - ►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에 유의하여 문서기안 및 결재시 공개여부 검토 철저
- 문서의 결재권자가 상향되지 않도록 사무전결규정 준수
- 공개유예가 필요하거나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 **제한종료일 설정** 
  - ▶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 생산시 적극 활용
- '문서 제목'에 비공개대상정보 미포함 작성 요망
  - ▶ 원문공개대상이 아니여도 모든 결재문서(비공개 포함)의 문서제목(정보목록)은 공개되므로
    - ⇒ 문서제목에 이름, 연락처, 소송번호, 사건번호, 체납관련 업체명 미포함하여 작성
- 본문에 개인 정보, 민감한 사항 등 비공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, 가능한 본문에는 삭제하고 <u>첨부물로 분리하여 "부분공개"로 설정</u>
- 붙임 1. 점검결과 내역 1부.
  - 2. 참고자료 1부. 끝.